

# 201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 I. 회 부 안 건

- 의안번호 : 제18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안 건 :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18. 8. 16
- 회부일자 : 2018. 8. 21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II. 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

#### 1. 추경예산안 규모

- 푸른도시국의 추경 예산안은 기정 4,160억 4천2백만원에서 134억 5천1백만원이 증액된 4,294억 9천3백만원임.
-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2,357억 8천3백만원에서 55억 9천3백만원이 증액된 2,413억 7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802억 6천만원에서 78억 5천8백만원이 증액된 1,881억 1천8백만원임.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율(%)
총괄	416,042	429,493	13,451	3.1%
일반회계	235,783	241,376	5,593	2.3%
특별회계	180,260	188,118	7,858	4.2%

## 2.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

- 2018년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8개 사업 및 국비반환금 5건 76억 2천 9백만원 증액되었고, 12개 사업에서 20억 3천5백만원 감액 됨  
도시개발특별회계 6개 사업에서 98억 5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1개 사업에서 20억 감액 됨
- 일반회계 증액사업(76억 2천9백만원)은 8개 사업과 국비반환금 5건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서울로7017운영관리	3억 8천9백만원
- 국외 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	3천만원
- 화분 나누기 행복 더하기	4천6백만원
- '정원도시, 서울' 계획 수립	2억원
-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6억 5천만원
-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5억 3천8백만원
- 2018년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	4천만원
-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49억 8천만원
- 국비반환금	7억 5천6백만원
· 공원녹지정책과	3천3백만원
· 조경과	3천3백만원
· 자연생태과	8천7백만원
· 산지방재과	6억 1백만원
· 서울대공원	2백만원

○ 일반회계 감액사업(20억 3천5백만원)은 12개사업으로 다음과 같음.

- 산불방지대책(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경상) △1천6백만원
- 산불방지대책(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경상) △2억 1천6백만원
- 산불방지대책(산불교육훈련및조사-경상) △3천5백만원
- 산불방지대책(산불교육훈련및조사-자본) △1백만원
- 산불방지대책(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자본) △2억 5천4백만원
- 산불방지대책(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자본) △7억 7천2백만원
-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 △3억 4천1백만원
- 동물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8천4백만원
- 서울대공원 전산화 사업 △6천7백만원
- 서울대공원 경비대 운영 △1억 2백만원
-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3천3백만원
- 동물사 유지 관리 △1억 1천4백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증액 사업(98억 5천8백만원)은 6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음.

-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12억원
- 쌍문근린공원(도봉)조성 16억 2천2백만원
- 동네뒷산 공원조성 19억 1천2백만원
- 서리풀근린공원(서초) 조성 28억 3천6백만원
- 천왕도시자연공원(천왕골지구) 조성 14억 5천8백만원
-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비(부대비용) 8억 3천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감액 사업(20억원)은 1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음.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20억원

### Ⅲ. 추정예산안의 사항별 내역

#### 1. 일반회계 사항별 내역

##### 1) 서울로7017 운영관리

3억 8천9백만원

- 서울로7017의 관광편의시설 8개소 운영의 수탁자인 서울관광마케팅(주)가 서울관광재단으로 바뀌면서 위·수탁협약을 승계하였으나 적자누적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민간위탁금을 신규 편성.

##### 2) 국외 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

3천만원

- 중구 장교동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 등으로 훼손된 부분의 복구 및 향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

##### 3) 화분 나누기 행복 더하기

4천6백만원

- 유지가 곤란한 식물을 수집하여 치료하고 생육시켜 식물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스마트온실의 설계용역비.

##### 4) '정원도시, 서울' 계획 수립

2억원

- 사유지에는 생활주변 꽃 나무심기 운동 등 시민녹화를 지원하고, 공유지에는 거점 정원 조성 및 정원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동 사업을 집행하기 전,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 5)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6억 5천만원
- 현장근로자의 대기실 설치하기 위해 당초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비용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근무자의 근로환경, 내구성 등 안전을 고려, “반영구적인 구조의 일반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의 부족분과 현재 설치운영 중인 하늘공원 정상의 노후 전망대 공사비.

- 6)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5억 3천8백만원
- 국비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에 올해 국비 3억원이 확보된 바, 국·시비 매칭비율(50:50)을 반영함.

- 7) 2018년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 4천만원
- 서울대공원 조경과에서 식물유전자원의 보전증식을 통한 식물원 특화사업 일환으로 ‘국내외 끈끈이귀개과 수집 및 증식’ 과제 위탁연구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교부에 따른 예산반영임.

- 8)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49억 8천만원
- 서울대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 보수 및 개선
    - 동물사 동물 내실 페인트, 철망 보수 및 배수관 등 안전 취약시설 보수
    - 코끼리 그늘막, 근무자 안전난간 등 중요 동물 복지 및 사육사 안전 개선
    - 동물원 시설물 옥상방수, 노후 기계설비 정비 및 통합 제어설비 설치
    - 서울랜드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변전실 정비로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 화재, 감전, 부상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 9) 국비반환금

7억 5천6백만원

-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국비잔액 반납.

※ 공원녹지정책과 3천3백만원, 조경과 3천3백만원, 자연생태과 8천7백만원, 산지방재과 6억 1백만원, 서울대공원 2백만원

## 10) 산불방지대책 국비보조 6개 사업

△12억 9천4백만원

- 국고보조사업 중 산불방지대책 사업 가내시된 6개 사업\*과 확정내시된 2개 사업\*이 동일하나 중복편성된 6개 사업을 감액.

※ 6개 국비사업(가내시) : 산불방지대책(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 -경상), 산불방지대책(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경상), 산불방지대책(산불교육훈련및조사-경상), 산불방지대책(산불교육훈련및조사-자본), 산불방지대책(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자본), 산불방지대책(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자본)

※ 2개 국비사업(확정내시) :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불방지대책(자본)

## 11)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

△3억 4천1백만원

- 서울식물원 개원시기가 당초 6월에서 연기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이 감소되어 인건비 불용이 예상됨에 따른 감액.

## 12)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감소

- 동물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8천 4백만원
- 서울대공원 전산화 사업 △6천7백만원
- 서울대공원 경비대 운영 △1억 2백만원
- 동물사 유지관리 △1억 1천4백만원

13) 야생동물종보전연구

△3천3백만원

- 국비보조금(1천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매칭시비(국비:시비 30:70) 편성액을 감액.

2. 도시개발특별회계 사항별 내역

1)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12억원

- 동 사업은 북서울꿈의숲 내 노후된 전시관 개선과
  - 꿈의숲 아트센터 드림갤러리 내 어린이 교육장 조성
  - 꿈의숲 아트센터 북카페 내 놀이방 시설 개선 설치
  - 상상톡톡미술관 야외 전시실(2층) 데크 개선
  - 방문자센터 전시관(1층) 전시시설 및 영상장비 개선 등
- 공원 내 애완견 목줄 미착용 위반 과태료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 교체비용.

2) 공원용지 보상 예산의 추가

78억 2천8백만원

- 공원용지 보상 대상 필지의 감정평가 결과,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보상액이 높게 산정되어 보상액의 부족분 반영.
  - 쌍문근린공원(도봉) 조성 16억 2천2백만원
  - 동네뒷산 공원조성 19억 1천2백만원
  - 서리풀근린공원(서초) 조성 28억 3천6백만원
  - 천왕도시자연공원(천왕골지구) 조성 14억 5천8백만원

**3)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비(부대비용) 8억 3천만원**

- 장기미집행 공원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19년 보상 토지에 대한 측량과 감정평가 등 사전절차 비용(8억원)과
- 보상대상지 선정을 위한 보상심의 위원회 운영과 시민주도의 다양한 도시공원 확보 운동 전개를 위한 경비(3천만원).

**4)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20억원**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원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에 중복편성 되어있어 공원녹지정책과에 편성된 예산(20억원)을 감액.(※ 감액예산은 전액국비)

## **IV.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 선 희)**

### **1. 2018년 추가경정예산 개요**

- 서울시 2018년 1차 추경예산은 기정 31조 9,163억 4천6백만원에서 3조 6,742억 4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35조 5,905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11.5% 증액)
  - ※ 2017년은 추경예산으로 2조 312억원이 증가되었음.
-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 2,357억 8천3백만원에서 2.4%(55억 9천3백만원) 증액된 2,413억 7천6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 1,802억 6천만원에서 4.4%(78억 5천7백만원) 증액된 1,881억 1천7백만원임.
- 푸른도시국 추경 예산 증액은 174억 8천7백만원, 감액은 40억 3천5백만원이며, 세부 사업은 총 27건으로 증액 21건, 감액 8건임.



## 2. 일반회계 세부 사업별 의견

첫째, 사업성격 및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 사업명: 국외 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 (사업설명서 314쪽)

[기정: 2억원, 증액: 3천만원]

- 서울시에서는 해외 도시 교류의 일환으로 서울공원을 만들어 서울시의 홍보와 국제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에 조성한 서울공원 시설이 노후 하거나 훼손된 경우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속적인 공원 시설 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연도	2016	2017	2018
예산(백만원)	7	351	200
점검	파리, 베를린	카이로, 테헤란	-
정비공사	-	파리, 베를린	카이로

- 금회 증액되는 3천만원은 지난 6월 일반시민의 낙서로 훼손된 서울 중구 장교동 1-7번지에 있는 베를린광장 장벽을 보수하는 예산임. 베를린광장은 2003년 베를린에 서울공원을 조성한 후 베를린시에서 감사의 표시로 2005년 베를린장벽 일부를 서울시에 기증하여 조성된 것으로 현재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음.
- 베를린 광장 복원의 시급성,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국외에 조성된 서울공원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내에는 베를린광장 이외에도 외국에서 만든 공원이 3개(앙카라 공원, 파리공원, 라틴아메리카공원)가 있으므로 향후 공원 관리 예산을 지원해야 할 사례가 발생할 경우, 명확한 근거에 의한 적정한 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집행 하여야 할 것임.



그라피티에 훼손된 청계 베를린광장 베를린장벽 (사진 연합뉴스)

- 사업명: 서울대공원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설명서 337쪽)  
[기정: 55억 5천만원, 증액: 49억 8천만원]
- 금번 추경에서는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예산으로 기정예산 55억 5천만원의 90%에 해당하는 49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선진 동물원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은 최근 AZA인증<sup>1)</sup>을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AZA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 시설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동물사 환경정비는 21개소에 3천만원씩 6억 3천만원, 안전보수는 30개소에 1천만원씩 3억원을 편성하는 등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분배 편성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에서는 제출한 계획과는 상이한 내역이 포함되는 등 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 앞서 서울대공원은 2016년 겨울 AI발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조류의 보전과 시설 개선을 위해 재난기금 24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2017년에는 추경을 통해 공원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비 71억원을 증액하여 공사 하였으나, 2018년 8월말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 2018년 예산의 원인행위율을 살펴보면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예산 55억 5천만원은 85% 정도 집행한 수준으로 본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사를 공기내 완료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할 시기에 또 다시 계획도 미비한 추경예산의 편성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물원 정문 개선은 과거 몇 년 동안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했던 대규모 사업이지만(추정예산 30억원), ‘공원 안전시설 보수정비’사업에 정문 설계비 2억원을 포함시킨 것은 예산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바, 조정이 필요할 것임.

---

1) AZA 인증이란? 1924년 설립된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ssociation of Zoo and Aquarium)에서 재정운영, 동물관리, 교육, 시설 등 동물원 운영 전반에 평가를 하여 최고수준 동물원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인증기관으로 될 경우 전세계 최고수준 동물원(231개)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 둘째,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시설 운영비지원의 부적합성

- 사업명: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사업설명서 313쪽)

[기정: 0 원, 증액: 3억 8천9백만원]

- 서울로 7017 사업은 중구 남대문로에서 용산구 만리동을 연결하는 46년이 경과한 서울역고가도로를 재생하여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든 것으로, 폭 10.3m, 연장 1,024m, 높이 17m의 교량과 교량 하부 광장에 나무를 식재하고 카페 등 18개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2017년 5월 개장하여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관리 운영중임.
- 금번 추정안은 서울로 7017 운영관리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운영비 3억 8천9백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편성한 것으로 관광편의시설은 제272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를 받았으며, 2017년 5월 개장 이후 지금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음.
- 당시 푸른도시국에서는 관광편의시설인 종합관광정보센터, 카페, 식당, 기념품숍 등 8개 시설을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였으며, 수익 계약으로 서울관광마케팅(주)에 위탁하였음.
- 2017년 2월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관광정보센터와 기념품샵은 전문성을 인정하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카페,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 사업을 관광전문가에게 일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것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2)에 시장이

2)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위탁 할 수 는 있으나, 카페, 레스토랑 같은 사용수익 허가대상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두 종류의 시설을 묶어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은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임<sup>3)</sup>. 서울로의 관광편의시설은 계약당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수익계약 하였으나, 계약 후 단순 적자 누적을 이유로 예산지원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임.
- 또한 (재)서울관광재단<sup>4)</sup>은 계약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5월 11일 적자 운영을 사유로 운영한지 1년도 안된 서울로 관광편의시설의 위탁운영 반납 요청을 하였으며,
- 「서울로 7017 관리 운영에 관한 위·수탁협약서」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관련 계획,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재)서울관광재단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은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나, ① 기능보강과 같이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 ② 메르스, 일본원전사고,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③ 외부 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 근거 확보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10쪽)

4) 당초 위탁 계약 당사자는 서울관광마케팅(주) 이었으나, 2018년 5월 1일 (재)서울관광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사무를 이관 받았음.

- 출자·출연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력이나, 운영적자 개선을 위한 노력 보다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포기를 결정 했고, 사업을 포기한 수탁자에게 운영관리비를 추경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민간위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나쁜 사례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수탁 기관인 서울관광재단에게는 계약기간인 3년의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중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빠르게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재)서울관광재단은 서울시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금번 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에 운영비 9억 5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설명서 197쪽). 재단의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바,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인한 손실은 소관부서인 관광체육국의 출연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임.

### 셋째, 추경예산의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 사업명: '정원도시, 서울' 계획수립 (사업설명서 321쪽)  
[기정: 0 원, 증액: 2억원]
- 민선6기부터 현재까지 푸른도시국은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1,000개의 숲과 1,000개의 정원을 조성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23개 사업을 추진해 왔음.

- 금회 2억원이 편성된 ‘정원도시 서울’ 계획 수립사업은 서울을 시민 참여형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사업의 기본계획을 추경예산을 통해 수립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사업명: 화분 나누기 행복 더하기 (사업설명서 320쪽)

[기정: 0 원, 증액: 4천6백만원]

- 화분 나누기 행복 더하기 사업은 유지가 곤란한 식물을 수집하여 필요로 하는 시민 등에게 분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을 통해 온실 설치를 위한 설계비 4천6백만원이 반영되었음.
-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화분형 식물 보급 행사를 지원하는 온실 설계 예산이지만, 본 사업은 시민단체를 포함한 협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뿐 운영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편성된 예산임.
- 2018년도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대상지 선정, 협의체의 운영 등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경으로 온실 설계비만 편성한 것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2019년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넷째, 보완이 필요한 국비 지원사업의 절차상 문제점

- 사업명 :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사업설명서 333쪽)

[기정: 6천2백만원, 증액: 5억 3천8백만원]

-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10ha의 면적 대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6년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에 선정(50:50)되면서 사업규모 또한 확대(50ha)되었고, 2017년부터 총사업비 48억원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에는 4억원(국비2억원, 시비 2억원)으로 기본설계를 하였으며 2018년에는 지원받은 국비 6천2백만원에 시비매칭금액을 포함한 5억 3천8백만원을 맞추기 위해 추경이 필요한 실정임.
-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았다고는 하나 시비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원받은 국비를 건축설계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 성립 이전에 사전 공사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시민의 건강증진과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적합한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임.
- 현재 서울대공원 치유의숲은 자연생태과로부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받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조성 후 구체적인 관리, 운영 계획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임.



### 3.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부 사업별 의견

첫째, 사업성격 및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 사업명: 시공원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설명서 311쪽)

[기정: 371억 7천7백만원, 증액: 12억원]

- 본 사업은 자치구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공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노후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371억 7천7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안내판 교체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12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임.

- 공원 안내판 시설 개선	6억원
- 꿈의숲 아트센터 드림갤러리 등 시설 개선	3억 5천만원
- 방문자센터 전시관 개선	2억 5천만원

-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문화정책과 출연금으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경미한 보수공사는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으로 자체처리하나, 대규모 보수공사의 경우 재산관리관인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 북서울꿈의숲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직영공원으로 자치구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공원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예산으로 북서울꿈의숲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참고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로 6억 5천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둘째. 공원용지 보상 예산의 가변성에 대한 대응 미비

(사업설명서 315~318쪽)

- 금회 증액 편성된 토지보상예산은 쌍문근린공원(도봉) 16억 2천2백만원, 서리풀근린공원(서초) 28억 3천6백만원, 천왕도시자연공원 14억 5천 8백만원, 동네뒷산 공원조성 19억 1천2백만원으로 토지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경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임.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지방채 발행 등 보상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특히 감정평가 기관에 따라 평가금액이 상이하고, 연도별로 감정평가금액이 급등하는 등 예상보다 보상금액이 상향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 보상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1

###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참고자료 2

### 201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연번	회계 구분	사 업 명	기정예산	증액	감액
<b>합 계</b>					<b>17,487</b>	<b>△ 4,035</b>
푸 른 도 시 국	1	특별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37,177	1,200	
	2	특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6,964		△ 2,000
	3	일반	서울로7017운영관리	4,326	389	
	4	일반	국비반환금 (공원녹지정책과)	74	33	
	5	일반	국외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	200	30	
	6	특별	쌍문근린공원(도봉)조성	4,863	1,622	
	7	특별	서리풀근린공원(서초)조성	9,744	2,836	
	8	특별	천왕도시자연공원(천왕골지구)조성	1,160	1,458	
	9	특별	장기미집행공원 보상비(부대비용)	-	830	
	10	특별	동네뒷산공원조성	37,477	1,912	
	11	일반	화분나누기 행복 더하기	-	46	
	12	일반	‘정원도시,서울’ 계획 수립	-	200	
	13	일반	국비반환금 (조경과)	4	33	
	14	일반	산불방지대책등6개국비사업	1,294		△ 1,294
	15	일반	국비반환금 (자연생태과)	95	87	
	16	일반	국비반환금 (산지방재과)	500	601	
	17	일반	월드컵공원시설물 보수정비	2,180	650	
	18	일반	식물원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	4,450		△ 341
서 울 대 공 원	19	일반	동물관리및 프로그램 운영	3,229		△ 84
	20	일반	서울대공원전산화 사업	549		△ 67
	21	일반	서울대공원경비대 운영	431		△ 102
	22	일반	서울대공원치유의 숲 조성	62	538	
	23	일반	2018년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	-	40	
	24	일반	야생동물 홍보전 연구	367		△ 33
	25	일반	동물사유지 관리	419		△ 114
	26	일반	공원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5,550	4,980	
	27	일반	국비반환금 (서울대공원)	2	2	

### 참고자료 3

## 서울시 조성 국외공원 현황

● 총 8개소 (공원 7, 거리 1)

대상도시 (명 칭)	위 치	규 모 ( <i>m</i> <sup>2</sup> )	조성 연도	사업비 (백만원)	주 요 시 설	조 성 사 유
계	7개국 8개소	2.1km 54,627		14,568		
터키 앙카라 (한국공원)	시내 중심부	10,230	1973	70	한국전 참전 기념비, 국기계양대, 헬스 등	자매도시 및 한국전 참전 기념
몽골 울란바타르 (서울의거리)	시내 중심부	2.1km	1996	2,900	정자, 가로등, 수목, 보도블럭, 헬스 등	자매도시 교류사업
이집트 카이로 (서울공원)	국제공원 내	2,000	1998	1,493	정자, 연못, 대문, 전통담장 등	자매도시 교류사업
프랑스 파리 (서울공원)	아끌리마따시 옹공원 내	4,675	2002	1,968	정자, 피세문, 중문, 꽃담, 월대, 연못 등	자매도시 교류사업
이란 테헤란 (서울공원)	북서부 한국 대사관 인근	10,000	2003	비예산	도서관, 사격장, 분수, 어린이놀이터 등	수교 40주년기념
베를린 마르잔 (서울정원)	자유공원 내	3,000	2006	2,176	정자, 장승, 장독대, 숫대, 계류 등	'03.9. 공동선언문 채택
몽골 울란바타르 (서울숲)	바얀주르크 국립정원내	15,793	2013	2,790	정자, 연못, 전통담장, 계단식화단 등	자매도시 교류사업
		(862)	2015	200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대, 그네 등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서울공원)	바부르공원 내	8,067	2014	2,971	누각, 연못, 담장, 정 자 해치상 등	자매도시 교류사업